

#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

2009. 12. 1 제정

2012. 6. 1 개정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비지에프리테일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비에제프리테일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#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'공정거래 자율준수'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② '공정거래 관련법령'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

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,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.

- ③ '경쟁당국'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.
- ④ '자율준수프로그램(CP : Compliance Program)'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.
- ⑤ '자율준수관리자'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- ⑥ '자율준수담당자'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별 자율준수업무를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.

##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###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

#### 제4조(선임과 해임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며, 해임

시에도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한다.

-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을 전 임직원에게 문서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(권한과 의무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권
  - 2.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, 시정요구권
  - 3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
  -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-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
  - 2.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

### 제6조(직무)

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
- 2.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및 수립
- 3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정기 감사(점검)를 반기 1회 이상 실시
- 4.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

5. 기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
6.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
7.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
8.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
9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2절 전담조직 및 임직원

### 제7조(자율준수실무팀)

자율준수실무팀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, 회사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.
2.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CP를 실무적으로 실행, 운영 및 관리한다.
3. CP의 계획·설계 및 구축, 운영매뉴얼 등 각종 회사 규정·기준 작성, 준법 준수현황 진단 및 점검, 임직원 교육관리, Compliance 관련 사건 대응 및 처리, 임직원 제재,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 등 CP 제반 업무를 실무적으로 운영한다.
4. 자율준수실무팀장은 대표이사, 이사회, 준법경영 최고책임자 및 공정거래 제재위원회 등에 공정거래 관련 주요사안 및 업무결과 등을 직접 보고한다.
5. 업무수행(제보사항 조사, 모니터링, 점검 등 포함)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해당

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는 성실히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.

6. 자율준수의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7. 자율준수실무팀장은 필요한 경우, 자율준수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. [2012. 6. 1 개정]

## 제8조(회사의 지원)

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## 제9조(자율준수담당자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각 본부별로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율준수담당자의 관리 하에 공정거래 업무를 진행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주기적(분기별 1회 이상)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10조(임직원의 책무)

-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담당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③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3절 자율준수협의회

### 제11조(설치 및 구성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각 본부의 임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.

### 제12조(역할)

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법률 검토 및 정책 자문
-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

## 제4절 공정거래 제재위원회

### 제13조(설치 및 구성)

- ① 제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인사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-
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인사제재 조치 필요시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#### **제14조(역할)**

제재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
### **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**

#### **제15조(자율준수편람)**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6조(교육프로그램의 실시)**

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자율준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

자율준수교육을 실시한다.
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.
- ③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 또는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.

### **제17조(감사 제도)**

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①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, 조사
-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
- ③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

### **제18조(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)**

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항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연간 1회 위반한 임직원은 제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및 시정명령 등 기타 제재를 받는다.



- 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연간 2회 위반한 임직원의 경우 연대책임으로써 행위자 및 팀장 까지 시말서를 작성하고 제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평가에 반영한다.
-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의 손해(과징금 등) 발생 시 제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행위자 및 팀장에게 회사의 손해를 공동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④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기타 임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제재조치 결과를 사내 공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를 전파하여 교육한다.

### **제19조(문서관리)**

-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.
-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.

### **제20조(인센티브제도)**

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 인센티브제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.[2012. 6. 1 개정]

### **제21조(제보 절차)**

- ① 회사 임직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, 각 본부별 자율준수담당자, 경영진단팀, 홈페이지의 공정거래 자율신고 센터에 제보 할 수 있다.
- ② 비지에프리테일 홈페이지 공정거래자율준수 사이트의 자율신고 센터를 통해 인터넷 신고, 우편신고 및 유선신고 등으로 제보 할 수 있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 받은 위반사항의 내용을 각 본부의 자율준수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, 각 본부의 자율준수담당자는 조사 후 조사 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 사항이나 위반 가능성이 발견 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**제22조(제보자 보호)**

제보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제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- ① 제보자는 제보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.
- ② 제보자가 제보를 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서면으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구제를 소명할 수 있고, 자율준수관리자는 이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하여졌다면 대표이사에 보고하고, 대표이사는 시정 명령을 취할 수 있다.[2012. 6. 1 개정]

## 제4장 평가

### 제23조(운영성과 평가)

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# 제24조(경쟁당국과의 관계)

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,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### 제25조(위임)

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인원을 위임하거나 세 부서항을 별도로 제정 및 개정 운영할 수 있다.

## 부칙

### 제1조(시행시기)

본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제2조(자문)

공정거래 관련법규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담당자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.